

*비상식 입수본

(1203부)

구비한 문서

EMBARGO

Not for release before

관방장관 담화(한)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91.12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는 바, 금번 등 조사결과가 종합되어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경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하여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에 관여하였는 바, 그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현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하여는 일본을 별도로 하인 한반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의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종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졌다.

- 조사대상기관 :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
- 증인정취 : 당시 군대위안부, 당시 군인, 당시 조선총독부 관계자, 당시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의 거주자, 역사연구가 등
- 참고한 국내외 문서 및 출판물 : 한국 정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련단체가 작성한 구 위안부의 증언집 등. 또한 동 문제에 관한 국내출판물이 많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을 참조하였다.

동 문제에 관해 정부는 이미 작년 7.6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그 후의 조사들 근거로 동 문제에 관해 종합한 것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게 되었다.

2. 소위 종군위안부분제의 실태에 관하여

상기의 자료조사 및 증인정취조사결과, 그리고 참고로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이 사항이 밝혀졌다.

(1) 위안소 설치의 경위

각지에 있어서 위안소의 개설은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 부내 자료에 의하면, 구일본군 점령지역

내에 있어서 일본군인이 주민에 대해 강간 등 불법한 행위를 행하여, 그 결과 반일감정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성병 등의 병으로 인한 전력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방첩의 필요가 있었던 것 등이 위안소 설치의 이유가 되었다.

(2) 위안소가 설치된 시기

1932년 소위 상해사변 발발시, 그 지역의 주둔부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뜻의 자료가 있으며, 그때부터 종전까지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 지역적 범위는 전쟁의 확대와 함께 넓혀졌다.

(3) 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

금번 조사결과 위안소의 존재가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당시), 타이, 버마(당시), 뉴기니아(당시), 홍콩, 마카오 및 佛領 인도지나(당시)이다.

(4) 위안부의 總數

발견된 자료중에는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고 또한 이것을 추측하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어서, 위안부 총수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장기적으로,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안부의 출신지

금번 조사결과 위안부의 출신지로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 한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네델란드이다. 또한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

(6) 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 민간입자가 경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 일본군이 그 개설향을 하거나, 위안소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관리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은 위안부 및 위안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안소규정을 만들어 이용자에 피임구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군의가 정기적으로 위안부의 성병 등의 병검사를 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안부에 대해서 외출시간 및 장소를 한정하는 등의 위안소규정을 만들어 관리해 온 곳도 있다. 어쨌든 위안부들은 戰地에 있어서는 상시군의 관리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하도록

되어,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 위안부의 모집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 그 경우도 전쟁의 확대와 함께 그 인원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져, 그러한 상황하에서 입자들이甘肅을 하거나, 또는 공포감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한 케이스도 많고, 더욱이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8) 위안부의 수송 등

위안부의 수송에 관해서는 입자가 위안부 등의 부녀자를 선박 등으로 수송함에 있어, 구 일본군은 그들을 특별히 군속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등, 그 도항신청에 허가를 하고, 또한 일본 정부는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 등을 하였다. 또한 군의 선박과 차량에 의해 전지에 수송된 케이스도 적지않게 있었으며, 그 밖에 폐주의 혼란상황하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

관방장관 추가발언

— 증언정취에 관하여 —

최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관계자의 협력에 의해 구위안부
분들로부터 당시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또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정리한 증인집도 읽어보았는데,
당시의 위안부분들이 지냈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고 다시한번
매우 마음아픈 심정이었다.

본인들로서는 괴로운 경험을 세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